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S&S's Newsletter – 2018 년 1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18년 1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을 시,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CONTENTS ●●●●●

1. 연구기금(RESEARCH AND DEVELOPMENT FUND)에 대한 세무총국 발행 공문 NO 5960/TCT-DNL (DATED 28 DEC 2017) - Page 3
2. 투자자산 평가절하 충당금(MAKING PROVISION FOR SHARES)에 대한 공문 NO.1520/CT-TTHT (DATED 10/1/2018) - Page 3
3. 영업손실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 유무에 대한 공문 NO. 1990/CT-TTHT (DATED 15 JAN 2018) - Page 4
4. 관계자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 유무에 대한 공문 No. 3966/CT-TTHT (DATED 24 JAN 2018) - Page 4
5.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 NO. 4884/CT-TTHT (DATED 30 JAN 2018) - Page 5
6.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투자법인의 상품 유통 및 유통관련 활동에 대한 시행령 NO.09/2018/NĐ-CP (DATED 15 JAN 2018) - Page 5-6
7.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소장의 노동허가서에 대한 공문 NO.1246/CVL-QLLĐNN - Page 6
8. 사회보험 법령에 대한 부연 규정 - 사회보험총국 공문 OFFICIAL LETTER NO. 384/BHXH-CSXH (DATED 31 JAN 2018) - Page 6-7
9. VAT 신고방식 제출 면제에 대한 국세총국 공문 NO.70/TCT-CS (DATED 5 JAN 2018) - Page 7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1. 연구기금(RESEARCH AND DEVELOPMENT FUND)에 대한 세무총국 발행 공문 NO 5960/TCT-DNL (DATED 28 DEC 2017)

2017년 12월 28일, 국세총국은 70%의 미사용 연구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의 세무처리에 대한 공문 OL 5960/TCT-DNL 을 발행하였습니다. 시행규칙 12/2016/TTLT-BKHCN-BTC 제 14 조에 의거, 연구기금의 설정 기간은 5년이며, 만약 회사가 해당 기간 내 70% 이상의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기금 및 관련 지연이자율을 가산한 법인세 (CIT)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세율은 연구기금을 설정한 시점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연이자율의 계산 기준은 반환 시점의 1년 기준 국채 이자율이며, 이자계산의 기간은 2년입니다.

주목할 사항으로, 해당 70% 연구기금 미사용에 따른 추가 지연이자세는 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2. 투자자산 평가절하 총당금(MAKING PROVISION FOR SHARES)에 대한 공문 NO.1520/CT-TTHT (DATED 10/1/2018)

2018년 1월 10일, 하노이 세무국은 투자자산 평가 총당금에 대한 공문 OL 1520/CT-TTHT 을 발행하였습니다.

시행규칙 228/2009/TT-BTC 제 5 조 1 항에 의거, 회사가 투자한 투자 지분 (주식)이 장부가와 비교하여 평가절하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총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시점에 총당금을 설정하는 수준은 **평가절하된 주식의 수 및 시장가격 / 장부가격의 차이**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총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총당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 총당금을 설정하면 되며, 만약 총당금 잔액이 평가 차액 설정 필요액과 동일한 경우 추가 총당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3. 영업손실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 유무에 대한 공문 NO. 1990/CT-TTHT (DATED 15 JAN 2018)

2018 년 1 월 15 일, 하노이 세무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을 수령한 법인이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련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유무와 관련하여 공문 OL 1990/CT-TTHT 을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시행규칙 No. 20/2017/ND-CP 제 8 조 3 항에 의거, 회사가 관계당사자로부터 차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는 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 회사는 EBITDA 수치가 0 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 이자비용을 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순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만약 EBITDA 가 0 보다 작은 경우 (즉 손손실이 있는 경우), 당기 내 전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4. 관계자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 유무에 대한 공문 No. 3966/CT-TTHT (DATED 24 JAN 2018)

시행규칙 No. 20/2017/ND-CP 제 8 조 3 항에 의거, 회사가 관계당사자로부터 차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는 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입이자비용”은 당기내 발생한 모든 차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며, 이는 제 3 자로부터의 차입 비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모든 이자비용에 대하여 상기 한도 (20%)로 손금산입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가치에 자본화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자비용은 베트남 회계규정 No 16 및 부칙 결정문 No 165/2002/QĐ-BTC 에 따라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예금 및 대여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 한도 (20%)를 계산할시 해당 이자 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5.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 NO. 4884/CT-TTHT (DATED 30 JAN 2018)

해당 공문에 따르면, 회사가 모회사나 외국인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 및 입찰서류 준비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시 법인세 시행규칙 96/2015/TT-BTC 의 제 4 조 1 항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교육비용 및 컨설팅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는 제외), 해당 활동은 외국인 계약자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계약자세 시행규칙 103/2014/TT-BTC 제 3 조 4 항 참고)

이와 더불어, 교육 과정이 회사의 업무, 직원의 전문화된 기술 및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상응하는 경우, 이는 개인소득세 면제 항목입니다. (개인소득세 시행규칙 111/2013/TT-BTC 제 3 조 2 항 d.6 목 참고)

다만, 입찰서류 작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약자세 중 5% 부가세, 5% 법인세 부과 항목입니다. (외국인계약자세 시행규칙 103/2014/TT-BTC 제 12-13 조 참고)

6.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투자법인의 상품 유통 및 유통관련 활동에 대한 시행령 NO.09/2018/NĐ-CP (DATED 15 JAN 2018)

2018 년 1 월 15 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투자법인의 상품 유통 및 유통관련 활동에 대한 시행령 09/2018/ND-CP 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수출입권 실행, 도소매권 실행 및 유통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 주목할만한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수출입권 실행에 있어 관련된 라이선스 (**유통 라이선스**)의 필요요건을 삭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시행령 5 조에 적시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매권 실행 / 도매권 중 특수 Code 실행 / 특수 로지스틱스 업무 / 상업용 광고 서비스 / 상업 중계 서비스 /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법인의 수출입권 실행의 범위는 베트남에서 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유통법인의 베트남 내 임가공 실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통품목 중 WTO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 (예를 들면, 윤활유, 쌀, 설탕, 출판물 및 신문, 잡지 등)을 유통할 시 추가 필요요건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유통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주체는 이전 규정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에서 산업통상부 (Departments of Industry and Trade)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18 년 1 월 15 일부로 발효되며, 이는 시행령 23/2007/ND-CP (2007 년 2 월 12 일자) 을 대체합니다.

7.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소장의 노동허가서에 대한 공문 NO.1246/CVL-QLLĐNN

노동법 10/2012/QH13 제 172 조 3 항에 따르면,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의 소장으로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해당 대표사무소가 국제 기구나 NGO 단체인 경우에 한해 노동허가서 취득이 면제됩니다.

만약 대표사무소의 소장이 해외 일반법인의 대표사무소에 속하는 경우, 그는 시행령 No. 11/2016/ND-CP 에 의거하여 노동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간주되며 (시행령 No. 11/2016/ND-CP 제 3 조 4 항 a 목 참고), 대표사무소 소장을 증명하는 근거는 대표사무소 설립 서류에 따릅니다.

8. 사회보험 법령에 대한 부연 규정 - 사회보험총국 공문 OFFICIAL LETTER NO. 384/BHXH-CSXH (DATED 31 JAN 2018)

필수사회보험 법령에 의거, 해당 공문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 규정에 대하여 회사들에 아래와 같은 강조점을 제공합니다.

- (i) 1 개월에서 3 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등록 및 납부 필요
- (ii) 사회보험 계산 기준 급여는 기본급, 수당 외 기타 보충금을 포함.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th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

이와 더불어, 베트남 사회보험총국은 필수사회보험 등록 의무에 대한 체크 및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형사법 상으로도 규정됩니다.

필수 사회보험 가입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8 년 1 월 1 일부로 시행되는 시행령 No. [141/2017/ND-CP](#) 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 Region I: VND 3,980,000/월;
- Region II: VND 3,530,000/월;
- Region III: VND 3,090,000/월;
- Region IV: 2,760,000/월.

9. VAT 신고방식 제출 면제에 대한 국세총국 공문 NO.70/TCT-CS (DATED 5 JAN 2018)

시행규칙 No. 93/2017/TT-BTC 에 의거, 2017 년 11 월 5 일부터 각 법인은 VAT 신고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Form 06/GTGT 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세무총국은 각 법인의 VAT 신고 제출서류를 VAT 계산의 근거로서 적용합니다. 회사가 각 부가세 신고시 형식 01/GTGT, 02/GTGT 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VAT 공제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며, 형식 03/GTGT, 04/GTGT 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VAT 직접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회계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0o0====

HAPPY NEW YEAR 2018